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사례관리 현장 점검

-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상황 점검 및 관계자 격려 -

보건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1월 10일(금) 충청남도 공주시청을 방문하여, 위기가구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추진하는 통합사례관리 사업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는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욕구나 위기도를 조사해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지속적인 상담·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취약계층 위기 해소를 위한 통합사례관리를 해오고 있다.

* 통합사례관리사 : 전국 229개 시군구 897명 배치(평균 3.9명, '23.3월 말 현원 기준)

** 통합사례관리 예산 : ('23년) 182억 원 → ('24년) 186억 원(4.1억 원, 2.2% 증)

이날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일선 현장에서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서비스 제공·지원을 위해 애쓰는 사회복지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사 직원들을 격려하고, 향후 보다 나은 서비스로 약자복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통합사례관리 업무 개선사항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위기가구 발굴 현황 및 통합사례관리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 중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보다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윤순 실장은 마무리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사례관리 업무담당자의 애로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 “공공부문의 사례관리 수행 실태를 파악하고 사례관리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11월 중 관련 연구를 착수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 「공공부문 사례관리 수행실태 파악 및 효율화 방안 모색 연구」 용역계약 추진(11월 3주)

붙임 1. 통합사례 관리 현장점검 개요

2. 통합사례 관리사업 개요

담당 부서	사회복지정책실 지역복지과	책임자	과 장	노정훈 (044-202-3120)
		담당자	주무관	김현진 (044-202-3133)



□ 방문 개요

- (일 시) 2023. 11. 10.(금) 15:30 ~ 16:30
- (장 소) 충남 공주시청 복지정책과(희망키움지원팀)
- 참석 대상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지역복지과장, 복지정보운영과장 등
 - (공주시청) 복지정책과장, 희망키움지원팀장, 통합사례관리사 등

□ 주요 내용

- 지자체 위기가구 발굴 후 업무지원 절차 및 처리현황
- 통합사례관리 업무수행 및 방문가구의 사례관리 현황
- 현장에서 업무추진 시 애로사항 등 의견 청취

□ 세부 일정(안)

구분	주요내용
15:30 ~ 15:4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착 후 관계자 인사 ○ 공주시 현황 청취
15:40 ~ 16:00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위기가구 발굴 후 업무처리 현황 확인 ○ 통합사례관리 업무수행 절차 및 방문가구의 사례관리 현황 확인
16:00 ~ 16:3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건의사항 등 현장 의견 수렴
16:30 ~ 16:3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무리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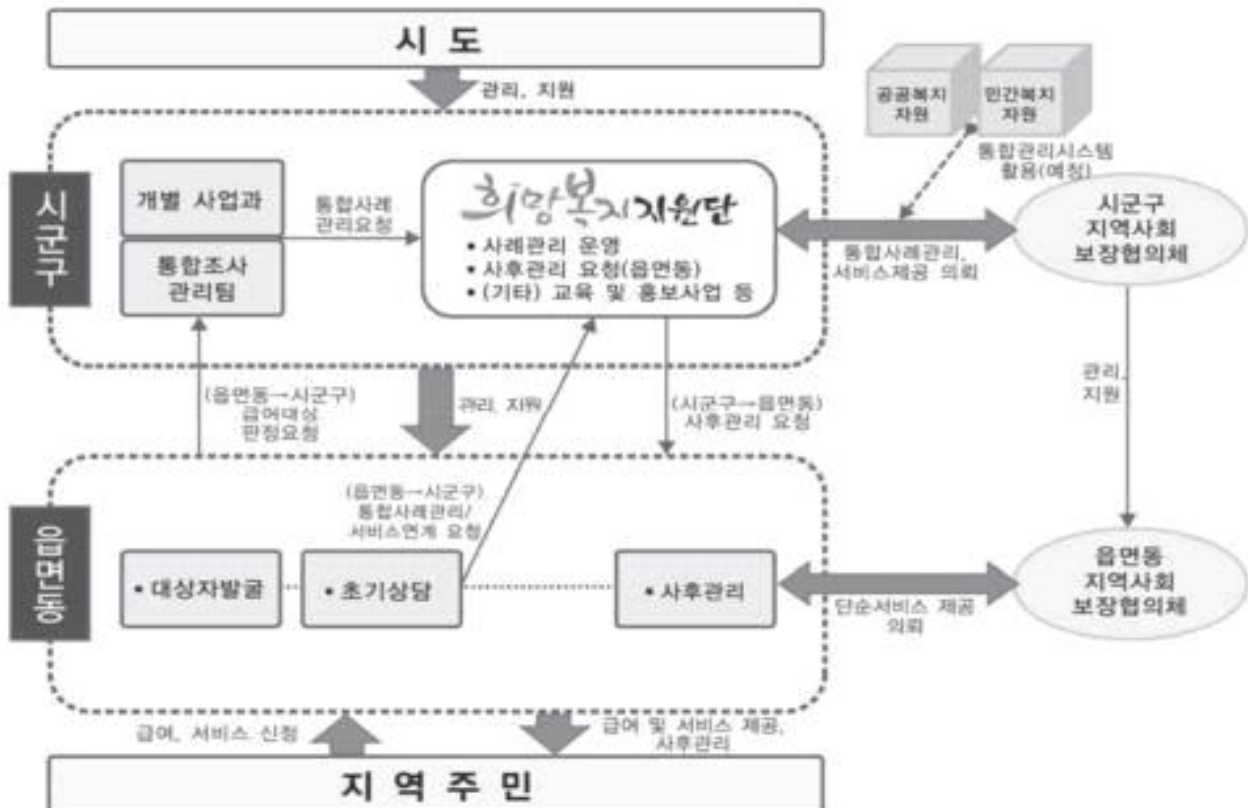
※ 방문일정은 현장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개요

- (정의)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하는 사업
- (법적 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42조의2 (통합사례관리)
- (관련 예산)

사업내역	'23년 예산 (백만원)	산출근거
○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18,229	
- 인건비	16,569	- 978명×12월×2,823천 원×50%
- 사례관리 사업비	1,605	- 시군구당 15,000천 원(서울 20%, 지방 50%)
- 현장 슈퍼바이저 운영	55	- 46명×200천 원×12개월×50%

□ 사업 모형도



□ 업무 절차

- (개요) 희망복지지원단은 읍면동에서 초기 상담 후 의뢰된 사례관리 가구에 대해 대상자 접수부터 종결까지 사례관리를 수행



※ 대상자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하고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통지 (사회보장급여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 (접수 및 욕구·위기도 조사) 희망복지지원단에 의뢰된 통합사례관리 사업 대상 가구 접수 및 욕구 조사*를 통해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경제, 돌봄,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주거, 일자리, 보육 및 교육, 관계, 안전, 법률 및 권익보장, 문화 및 여가

- (사례회의 개최) ▽사례관리 가구 선정,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점검, 종결 등 협의를 위한 회의(내부사례회의), ▽서비스 기관과 서비스 내용, 연계 방식 조정 등 위한 회의(통합사례회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 해결 중심 회의(솔루션 회의)

- (대상자 구분·선정) 사례관리 가구 또는 서비스 연계 가구로 구분*

* (사례관리 가구) 1개월 이상 중장기 개입이 필요한 가구

(서비스 연계 가구) 욕구가 단편적으로 1개월 미만의 단기 개입 또는 단순 서비스 연계를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한 가구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사례관리 가구에 대해 욕구별 개입 목표 (장·단기)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및 점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행상황 및 대상가구의 환경·욕구 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 (종결) 사례관리 개입 목표 달성 또는 복지 거부 등 사유로 사례관리 개입이 불가할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종결 여부 결정